

의안번호	2204490
의 퇴 인	이정문 의원
회 답 일	2024. 11. 8.
추 계 번호	24F4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과세특례 대상에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은 채무면제이익을 포함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국회의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44조제3항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¹⁾로부터 받은 채무면제 이익’을 포함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4조제3항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안정 등을 위한 투자·운용을 통해 그 수익을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 22)

2. 상세 사유

- 현행법은 채무면제를 받은 내국법인에 대해서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를 면제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채
무면제 상당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현행법상 과세특례 대상에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
구로부터 받은 채무면제이익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과세특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법인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런데 가용 정보가 미비하고, 과세대상이 불분명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
수효과의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를 위해서는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
구가 채무자(부실기업)에게 면제해 준 채무면제이익 규모에 관한 정보
필요
 - 사모펀드의 경우 전자공시서비스를 통해 ‘손익현황, 수익률, 자산현황
및 구성’ 등을 공시하고 있으나, 해당자료로는 구체적인 채무면제이익
을 파악할 수 없음
 - 다만, 채무면제이익 규모는 부실기업 발생 등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
- 참고로 2017~2023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형별 운용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현황

(단위 : 개, 조원, %)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합계	444	580	721	849	1,060	1,101	1,126
일반	378	487	597	688	860	917	948
재무안정	51	53	63	71	79	69	69
창업벤처	9	35	56	87	118	113	109
기타	6	5	5	3	3	2	-
약정액	62.7	74.4	84.3	96.7	116.1	125.8	136.4

주: 1. 제도개편('21.10.)으로 종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로 명칭 변경

2. 해당 수치는 각 연도 말일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 따라서 채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과세특례 대상에 ‘기업채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추가하는 안에 따른 수입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장설희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설희	02-6788-4836	shjang@assembly.go.kr